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882600 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고등학교 재학생)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학교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2021. 8. 2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외출 및 외박 시행안 V.9’를 마련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피
진정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외출 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외박이 통제되고 있어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생들은 강제로 기숙사에
머물러야 한다. 피진정학교의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전국단위모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전교생의 90%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학교 주변에는 PC방, 노래방을 비롯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코로나19 상황별 외출/외박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를 공지하고 시행해 왔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매뉴얼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진정인은 기숙사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기숙사 외출 시간을 축소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을 맞아 방역 당국이 국민의 건강 및 생명보호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단계별 거리두기를 시행하듯이,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별 외출/외박 매뉴얼'은 1,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우리 학교는 기숙형 학교이지만 기숙사 입소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므로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자택에서 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았고, 기숙사 입사를 했더라도 집단생활에 어

려움을 겪는 학생은 언제든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피진정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 기숙사에 있으면서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때문에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청에서 피진정학교 등 3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 밀집도 적용 조정방안을 내려보냈고, 그 내용 조건에 외출 및 외부인 접촉이 없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을 등교시키기 위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2022. 3. 7. 현재 평일에는 21:20~21:50(기숙사가 문을 여는 시간),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17:00~18:30(1시간 30분) 기숙사생들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박은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기숙사운영규정」 및 「기숙사생 생활규정」, 피진정학교의 '외출 및 외박 시행안 V.9', ○○○○교육청 '전국단위 모집 기숙학교 학사운영 방안 개정 안내' 공문(○○○○과-5672, 2021. 4. 10.)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피진정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다. 피진정학교(○○시 소재)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재학생의 90%(1,000여 명) 정도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

나, 기숙사 입소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나. 피진정학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한 '외출 및 외박 시행안 V.9'을 마련하여 2021. 8. 26.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숙사 벌점을 적용하고 퇴사 등의 처벌을 하며, ○○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6단계(중식, 양호, 주의, 위험, 심각, 최악)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에 대한 제한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6단계 기준 내용 및 상황 단계별 외출 및 외박 시행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6단계 기준

단계	기준
중식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국 확진자 수($x = 0$)
양호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북 확진자 수($y = 0$)
위험(1단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주 확진자 수(z) $0 \leq z < 6$
위험(2단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주 확진자 수(z) $6 \leq z < 12$
심각(3단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주 확진자 수(z) $12 \leq z < 24$
최악(4단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전주 확진자 수(z) $24 \leq z$

<표 2> 상황 단계별 외출 및 외박 시행내용

단계	제한 내용
중식	외출/ 외박 허용 - 코로나19 이전으로 환원
양호	외출 제한적 허용/ 외박 부모님 동행 시 허용 ① 평일 외출: 17:10~18:20(외출 지역 B), 21:20~21:50(외출 지역 A) ②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외출: 09:30~19:30(외출 지역 C)
위험(1단계)	외출 제한적 허용/ 외박 금, 토 및 휴일 전날 부모님 동행 시 허용

	① 평일 외출: 17:10~18:20(외출 지역 B), 21:20~21:50(외출 지역 A) ②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외출: 14:30~19:30(외출 지역 C)
위험(2단계)	외출 제한적 허용/ 외박 금, 토 부모님 동행 시 허용 ① 평일 외출: 21:20~21:50(외출 지역 A) ②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외출: 17:10~18:30(외출 지역 B)
심각(3단계)	외출 제한적 허용/ 외박 통제 ① 평일 외출: 21:20~21:50(외출 지역 A) ②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외출: 17:30~18:30(외출 지역 A)
최악(4단계)	외출/ 외박 전면 통제

※ 외출 지역: A(○○고 주변), B(○○동(신시가지 제외), ○○동), C(○○ 일원.
 단 ○○마을, ○○시장, 신시가지, 기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관광지 제외)

다. 피진정학교는 종래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여 실시하고, 외박자는 귀사일 기숙사 폐문 20분 전까지 귀사(하절기 21:30, 동절기 21:10)하도록 하며, 종교행사, 학원수강, 기타 용무가 있는 기숙사생은 외출할 수 있고 기숙사 폐문 시간(21:30) 이전까지 귀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2. 3. 7. 기준 평일에는 21:20~21:50, 주말 및 공휴일에는 17:00~18:30 기숙사생들에게 외출을 허용하며, 외박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라. 기숙사생이 지시 불이행을 하거나 기숙사 일과시간 미준수(귀사 및 등교, 자율학습 등)의 경우 별점 1점이 부과되며, 별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피진정인은 기숙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마. ○○○○교육청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학교 등교 원칙 (교육부)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교육청 방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소규모학교 기준 초과 학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및 전면등교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중) 2/3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바. ○○○○교육청은 전국단위 모집 기숙학교 중 등교·원격수업 병행 학교(3개교: 피진정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① 전교생 기숙사 생활, ② 기숙사 입소 전 진단 검사 실시, ③ 외출 및 외부인 접촉 없이(교사 등 학교 관계자 제외), ④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전부 충족되는 경우 학교 밀집도 원칙 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피진정학교는 2022. 3. 14. 기준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

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진정학교는 인정사실과 같이 ‘외출 및 외박 시행안 v.9’를 마련하여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숙사 별점을 적용하여 기숙사 퇴사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생들이 피진정학교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은 기숙사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기숙사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기숙사 운영 및 학교 내 대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 시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피진정학교 기숙사생들은 평일 30분,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30분의 외출만이 허용되어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외박도 전면 금지되어 부모 및 가족들과 사실상 만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진정학교 전교생 중 10% 가량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만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수준에 비추어 보아도 외출 제한과 외박 전면 금지는 과도한 수준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관련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

다.

피진정인은 ○○○○교육청이 피진정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 밀집도 원칙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외출 및 외부인 접촉 없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밀집도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아 모든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학교의 경우 10% 정도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학교 밀집도 원칙 예외요건 중 하나인 ‘전교생 기숙사 생활’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미 밀집도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피진정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는 기숙사생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기숙사생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진정인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학교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29.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고등학교 「기숙사생활규정」

사. 외박과 외출

<외박>

1.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며, 예외적인 경우 지도교사의 허가를 받는다.
3. 외박자는 귀사일 기숙사 폐문 20분 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하절기 21시 30분, 동절기 21시 10분).

<외출>

1. 종교행사, 학원수강, 기타 용무가 있는 기숙사생은 외출할 수 있으며, 기숙사 출입문 폐쇄 시간(21시 30분) 이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이후 완전 출입 통제).